

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중소벤처기업부 「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(안)」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보호,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)
 - (삭제) 「전통시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인조직
 - (변경) 상인조직 대표자 →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
-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호)
 - 기준 : 2,000㎡ 이내 밀집된 소상공인 점포 수
 - (당초) 25개(상업지역 외 20개) 이상 → (변경) 15개 이상(공용 면적 제외)
- 용어 정비(안 제5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중소벤처기업부 「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(안)」(전통시장과-975(2025.3.26.)호)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,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당초 우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,000㎡ 이내의 면적에 점포 수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,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었음.
- 그러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점포 수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,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요건을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됨.
- 개정안을 통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.